

충청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(중개정조례)(안)

심사보고

1998. 11. 4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1998년 10월 27일
- 회부일자 : 1998년 10월 27일

다. 상정일자 : 제1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-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1998. 11. 4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
심의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조규린)

가. 제안이유

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휴직제도등 혈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휴직에 따른 직권면직규정 보완
- 휴직기간 및 효력에 관한 규정 신설
- 근무상한연령 단축

3.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김 동 응)

충청북도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
검토한 바

이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공포(법률 제5568호, '98. 9. 19)
됨에 따라 본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
그 주요 내용으로는

-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공무원 정년이 1년씩 단축
됨에 따라 58세에서 57세로 하였고 휴직에 있어서도 형사
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명하도록 하던 것을 휴직을
명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
- 또한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에 대한 규정을 새로 신설하여
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타당하
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 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 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충청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(안)

○신·구조문대비표